

「화재보험의 현물 보상」

조 철 우 <보험영업부 차장>

1. 개요

이 조항은 보상의 방법중 현금 보상이 아닌 현물 보상(Reinstatement)에 관한 조항이다.

보험 회사는 손해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현금 보상 대신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상법에는 현물 보상을 정한 규정은 없다. 상법 제665조에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함은 금전을 급부하는 경우가 통상일 것이나 현물 보상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 상법 제683조에도 화재보험에 대해서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도 현물 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의 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이지만 예외로 피보험자가 과다한 손해액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보험 회사가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대체시키다면 피보험자로서도 이를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보상의 방법이 현금이 아닌 현물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손해액의 사정이나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현금 보상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2. 약관 내용

(1) 국문 약관

14 (현물 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축(再築), 수축(修築)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F.O.C.(F) policy의 현물 보상

14. The Company may at its option reinstate or replace the property damaged or destroyed, or any part thereof, instead of paying the loss or damage, or may join with any other Company or Insurers in so doing, but the company shall not be bound to reinstate exactly or completely, but only as circumstances permit and in reasonably sufficient manner, and in no case shall the Company be bound to expend more in reinstatement than it would have cost to reinstate such property as it was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such loss or damage, nor more than the sum insured by the Company

thereon.

If the Company so elect to reinstate or replace any property the Insured shall, at his own expense, furnish the Company with such plans, specifications, measurements, quantities, and such other particulars as the Company may require, and no acts done, are caused to be done by the Company with a view to reinstatement or replacement shall be deemed an election by the Company to reinstate or replace.

If in any case the Company shall be unable to reinstate or repair the property hereby insured, because of any municipal or other regulations in force affecting the alignment of streets, or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or otherwise, the Company shall, in every such case, only be liable to pay such sum as would be requisite to reinstate or repair such property if the same could lawfully be reinstated to its former condition.

14. (현물 보상)

당 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해액을 지급하는 대신으로 훼손 또는 멸실된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상 복구 또는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당 회사는 완전 무결하게 원상 복구할 의무는 없으며 사

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상당하고 충분할 정도로 원상 복구하면 되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 있어서의 원상 복구에 소요될 비용이나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당 회사가 인수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당 회사가 보험의 목적의 원상 복구 또는 대체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서 설계도, 견적서, 척도 및 기타 명세서를 작성하여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 회사가 원상 복구 또는 대체의 목적으로서 취하였거나 취하게 될 행위로서 곧 당 회사가 원상 복구 또는 대체를 선택하였다고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구획의 정리나 건축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시 또는 다른 현행 법규 때문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 복구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원상 복구 또는 수선할 경우에 소요되는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3) American Standard Policy의 현물 보상

14. Company's Options : It shall be optional with this Company to take all, or any part, of the property at the agreed or appraised value, and also to repair, rebuild or replace the property destroyed or damaged with other of like kind and quality within a reasonable time, on giving notice of its intention so to do within 3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proof of loss herein required.

14. (보험 회사의 선택권)

회사는 이 증권에서 요구된 손해증명 접수후 30일 이내에 회사의 의도를 통지함으로써 과손된 보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액 또는 평가액으로 소정 기일 내에 동일한 품질로서 원상과 같이 수리 재건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게 된다.

3. 현물 보상의 법리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의 기능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피해자에 대한 원상 회복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고가 없었을 때와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손해 배상의무를 이 본질에서 보면 배상의 방법으로서는 오히려 자연적 원상 회복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현대와 같은 화폐 경제 사회에서는 손해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전 배상주의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도 의무의 실행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는데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보험계약법에 있어서의 보험 회사의 손해 보상의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으로서 손해 보험에 있어서는 화재보험 이외에도 현물 보상 조항은 대부분 약관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보험이나 유리보험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 또는 대체 차의 교부·수선 등에서 이용될 수 있고 손상된 유리의 대체에도 실용화가 가능한 조항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물보상은 거의 실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물 보상의 이론상 문제로서는 이 제도가 손해 사정의 곤란성이나 기타 이유에서 금전 지급에 갈음하는 편법으로 인정되는 변칙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민법 제 394조 (손해 보상의 방법)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하여 실제상의 편의로서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민법 제764조(명예 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손해 보험 계약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의 손해 보상 방법은 금전 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물 보상도 가능한 것이며 민법과 보험계약법이 서로 반대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느 것이나 금전 배상내지 금전 급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고 하겠다.

다만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다수의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정형적·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보다 더 금전 급부의 요청이 강하다고 해도 그 차이가 상대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4. 현물 보상의 내용

(1) 현물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물 보상을 할 것인가, 현금 보상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험 회사에 있는바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의 선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국문 약관 14(현물 보상)에는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험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명백하다. 현물 보상에 의하느냐 금전 급부에 의하느냐 하는 것은 보험 회사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하나, 일단 보험 회사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임의로 결정 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이는 피보험자의 기대에 반하기 때문이다.

F.O.C(F) Policy 나 American Standard Policy 에도 각각 현물 보상이 회사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F.O.C(F) Policy 약관의 경우에는 '당 회사는 선택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해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훼손 또는 명실된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상 복구 또는 대체할 수 있다.' (The Company may its option reinstate or replace the property damaged or destroyed or any part thereof, instead of paying the amount of the loss or damage, or may join with any other Company or Insurers in so doing)로 규정하고 있다.

또 American Standard Policy 약관에는 소제목 자체가 '보험 회사의 선택권 (Company's options)'으로 되어 있으며 조문의 내용도 보험 회사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2) 보험 회사가 현물 보상을 선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

약관이나 F.O.C(F) Policy 약관에는 보험 회사의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American Standard Policy 약관에는 '회사는 이 증권에서 요구된 손해증명 접수후 30일 이내에 회사의 의도를 통지함으로써 행사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국문약관에는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액의 사정이나 지급보험금의 계산 등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면 될 것이며, 통지의 방법은 서면 통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국문 약관이나 American Standard Policy 약관에는 현물 보상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도면, 설계서 등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F.O.C(F) Policy 약관에는 이것이 명시화되어 있다. 즉 '당 회사가 보험의 목적의 원상 복구 또는 대체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서 설계도, 견적서, 척도, 수량서 및 기타 명세서를 작성하여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If the Company so elect to reinstate or replace any property the Insured shall, at his own expense, furnish the Company with such plan, specifications, measurements, quantities, and such other particulars as the Company may require)라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문 약관에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 통



지 등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의무와 같이 이것도 피보험자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보며, 또 서류 작성, 비용도 의무 이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현물 보상의 경우 우라 해서 특별히 회사나 피보험자에게 특별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배제하고 신의에 바탕을 둔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보험 회사의 현물 보상은 현금 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 책임의 유무 및 보상액이 결정된 후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또 현물 보상의 정도는 일반 손해 배상의 원칙에 비추어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손해 부분을 수선하고 소실한 건물 또는 동산과 동종 동질의 것으로 재축하거나 급부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 회사는 현물 보상을 선택한 경우에도 보험금액, 손해액 또는 보험가액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 재축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는 보험 회사가 현물 보상을 선

택한 이상 보험금액, 손해액 또는 보험가액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그 재축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축의 결과가 이재전보다 양호해졌을 때에도 이른바 ‘신구 문환공제’ (deductible of new for old)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느 정도 소모한 건물 또는 동산에 있어서는 그 기산액을 공제한 정도의 수선을 하거나 그 정도의 것을 공급하면 족하다는 설도 있다.

보험 회사는 현금 보상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의 사정, 손해 보상의 방법을 강구하여 손해 보험의 보상 이론에 적합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회사는 동종의 위험하에 조직된 위험 단체가 각출한 보험료의 신탁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과다한 보상이 될 때는 신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위반하는 배임 행위가 될 것이고, 부족한 보상이 될 때에는 피보험

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는 보험의 근본 이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조 (보험가입의무)에 의하여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는 신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경우 동법 제 8조(보험금액)에 의하여 특수건물 시가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으로 가입도록되어 있으므로 이의 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보험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물 보상을 채택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전액 부담하여 현물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결론

화재보험 약관상에는 대체적으로 현물 보상 조항을 약관에 첨부하여 인수하고 있으나 실제상 현물 보상하는 적용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 건물 등이 이재를 입은 경우 소관 부서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 국고에 입금하고 경제기획원의 추가 예산 배정에 의하여 복구를 받는 경우 상당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경미한 손해인 경우 (유리 파손, 외벽 손상 등) 보험 회사가 서비스적 측면에서 현금으로 보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해 부분을 복구시켜 줌으로써 사고 이전의 상태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조항은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조항이라 하겠다.❶